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가단53293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 선고 2022나119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가단5329361 판결

전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1.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금호, 김범선

변론 종결 2021. 12. 14.

판결 선고 2022. 1. 25.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62,179,253원 및 그 중 62,179,221원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2021. 3. 9.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피고 A은 12,9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69,020,6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C은 원고에게 69,020,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A, 피고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20%를 원고가, 80%를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A은 원고에게 12,9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75,118,253원 및 그 중 62,179,221원에 대하여는 2020.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 12,939,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대위변제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일반자금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6. 18.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8. 6. 18.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은 2020. 8. 17.경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D은행의 청구에 따라 2020. 12. 18. 피고 A을 대위하여 D은행에게 62,326,525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147,304원을 회수하였고, 32원의 확정손해금채권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019. 4. 1.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2) 약속어음의 발행, 배서양도 가) 원고는 2020. 1. 15.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F과 사이에 매출채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에 관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G의 사내이사인 피고 A은 2020. 8. 25. 금액 12,939,000원, 수취인 백지, 지급기일 2020. 12. 25.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G은 위 매출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F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양도하였다.

다) 그런데 G이 위 매출채권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F의 청구에 따라 2020. 10. 21. F에게 보험금 36,990,582원을 지급하였다. F은 위 보험금을 수령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여,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62,179,253원(= 대위변제금

62,326,525원 - 회수금 147,304원 + 확정손해금 32원) 및 그 중 62,179,221원(= 대위변제금 62,326,525원 - 회수금 147,304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20.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3. 9.까지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A은 원고에게 어음금 12,9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어음금에 대한 2020.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청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의 부동산 처분행위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A은 2020. 8. 24. 피고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8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64,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D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H저축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수인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원금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3) D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220,000,000원, H저축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150,000,000원이다. 피고 C은 피고 A에게 2020. 8. 25. 20,000,000원, 2020. 8. 27. 19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매매대금 580,000,000원에서 위 각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210,000,000원[= 580,000,000원 - (220,000,000원 +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A은 2020. 8. 27.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보전채권

1) 구상금채권: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8. 6. 1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D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이후 대출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가 2020. 12. 18. 피고 A을 대위하여 62,326,525원을 D은행에게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어음금 채권: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 채권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20. 1. 15. 원고와 F 사이에 매출채권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2020. 8. 25. 피고 A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그 약속어음이 F의 G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F에게 배서·양도된 사실, 이후 원고가 위 매출채권 보험계약에 따라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A이 G의 대표자인 B의 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위 매출채권 보험계약이 원고의 G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로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어음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어음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피고 C은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을 모두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23023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 을다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A이 2020. 8. 25. 수령한 매매대금 20,000,000원 중 19,700,000원이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로 이전되어, 그 중 10,000,000원이 2020. 8. 27. 피고 A, B의 자녀인 I에게 송금되고, 나머지는 카드대금 등으로 지출된 사실, ② 피고 A이 2020. 8. 27. 수령한 매매대금 190,000,000원 중 2020. 8. 27. 40,000,000원, 2020. 8. 28. 40,000,000원이 각 현금으로 출금되고, 2020. 8. 27.

105,000,000원이 피고 B의 계좌로 이전된 사실, ③ 피고 B의 계좌로 이전된 위 105,000,000원은 2020. 8. 28. 그 중 40,000,000원이 현금으로 출금되고, 같은 날 50,000,000원이 J에게 송금되었으며, 나머지는 어음금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은 피고 A의 계좌에서 2020. 8. 27. 현금으로 출금된 40,000,000원 및 2020. 8. 28.

현금으로 출금된 4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이 피고 B, A이 운영하는 K의 주식회사 L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고, 피고 B의 계좌에서 2020. 8. 27. I에게 송금된 10,000,000원과 2020. 8. 28. 현금으로 출금된 4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이 I에 대한 채무의 변제 및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80,000,000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금융거래내역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변제하였다 함은 매우 이례적인 점, I는 피고 A, B의 자녀인 점, I가 K에 대하여 급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다 제13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이 위 J로부터 2020. 8. 26. 40,000,000원, 2020. 9. 25. 75,000,000원, 2020. 9. 28. 44,000,000원 합계 159,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① 피고 C이 피고 A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210,000,000원 중 절반이 넘는 120,000,000원이 현금으로 출금되고, 10,000,000원이 피고 A, B의 자녀인 I에게 송금된 점, ② 2020. 8. 28. 50,000,000원을 송금받은 J는 그 직전인 2020. 8. 26. 피고 C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한 사람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의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거나,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피고 A의 친인척이 아닌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한 매매대금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① 피고 A, B 운영의 K의 직원들이 피고 C이 운영한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피고 A, B이 그 식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피고 C은 피고 B, A과 알고 지낸 사실, ② 피고 C은 공인중개사 없이 피고 A과 직접 합의하여 2020. 8. 24. 매매계약서 작성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20. 8.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고 A은 매매계약서 작성 며칠 전인 2020. 8. 17.경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날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0. 9. 16. 당좌계좌가 부도처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의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위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위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D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 H저축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2020. 9. 25.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58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D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220,000,000원, H저축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15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액배상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210,000,000원[= 580,000,000원 - (220,000,000원 + 150,000,000원)]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69,020,670원[= 62,179,253원 + 62,179,221원 × (0.08 × 82/365 + 0.12 × 280/365)]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69,020,6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69,020,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A, C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A,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진재경

별지